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49
----------	------

2018년 04월 0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18년 3월 20일
- 다. 회 부 일 : 2018년 3월 26일
- 라. 상 정 일 : 제28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4월 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보기획관 김태균)

- 가.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6조 제9호에 따라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2018. 5. 31로 만료됨에 따라,
 - 지하철 구간에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중단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은 2001년 서울시(48%)와 서울교통공사(52%)가 공동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2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낭비

※ 민간위탁과 자체 유지관리 비용 비교

구 분	민간위탁	용역시행	산 출 근 거
관리비용 (단위:천원)	324,830	766,174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2018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 지하철은 국가중요시설로 터널내 광통신시설물 관리는 공사 직원이 직접 수행시 출입허가, 안전요원의 배치가 불필요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분야 전문인력을 182명(자격증 96.7%) 보유하고 유지관리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풍부

3)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물량: 광케이블 351km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지하철 구간(1호선~8호선)에 설치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함) 제4조의3)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추진(2015.6.1)되었던 민간위탁 사업으로 그 동안은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 의회 동의를 갈음해 왔으나, 민간위탁 조례 개정(2017. 7. 17)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에 해당됨에 따라 최초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기존('17.7.17이전)에는 해당사무를 재위탁¹⁾ 또는 재계약²⁾ 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7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부칙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민간위탁조례를 개정·시행('17.7.13)하고 있음.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탁의 필요성

-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지하철 구간을 이용하여 서울시와 자치구를 광케이블로 연결하여 대민행정, 행정업무, 공공 와이파이, CCTV 영상 등 정보를 유통하는 핵심 IT인프라라고 하겠으며,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은 2001년 서울시(48%)와 서울교통공사(52%)가 공동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지하철(1~8호선 : 351km)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위탁기간이 만료(15.6.1~18.5.31) 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하철은 국가중요시설로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터널내 광통신시설물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이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긍정적 측면은 있다고 하겠음.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유지보수 현황〉

I 일반응역

- 장비현황 : 490,115천원
 - 통신장비 : 127대(e-Seoul Net:35, u-Seoul Net:92)
- 광통신시설물 : 40,800천원
 - 광케이블(지상) : 96km
 - 인·수공(180기) 청소 및 지중선 표시기(887개) 점검
 - 점검주기 : 년2회

II 민간위탁

- 민간위탁 광통신시설물 : 324,830천원
 - 광케이블 : 351km(e-Seoul Net:224, u-Seoul Net:127)
 - 점검주기 : 매월1회

<서울교통공사 현황>

설립근거 및 설립

- ◆ 지방공기업법 제49조(공사설립)
-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3.9. 제정)
- ◆ 서울교통공사 설립 (2017.5.31.)

운영현황

(’17.12.31 기준)

설립목적 (Mission)	· 1~8호선 지하철 건설·운영 및 부대사업 · 도시교통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자본금	21조 5,000억원 (납입자본금 19조 5,521억원)
-----------------------	--	------------	---

구 분	전 동 차	역 수	영업연장	수송인원	운수수익
계	3,551량	277역	300.1km	7,272천명/일	4,522백만원/일
1호선	160	10	7.8	478	235
2호선	814	50	60.2	2,198	1,485
3호선	490	34	38.2	897	522
4호선	470	26	31.7	925	550
5호선	608	51	52.3	898	558
6호선	312	38	35.1	562	323
7호선	577	51	57.1	1,030	685
8호선	120	17	17.7	284	164

○ 다만, 서울시의 주요 시설물을 경제적인 논리기준 만으로 판단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본 민간위탁 사무가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체 관리 또는 대행사무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과 자체 유지관리 비용 비교

구 분	민간위탁	용역시행	산 출 근 거
관리비용 (단위:천원)	324,830	766,174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2018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적용

다. 위탁 방식(수의계약)의 적정성

- 정보기획관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를 2003년부터 현재까지('15년 민간위탁 수행) 서울교통공사와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에 근거하여 서울시가 자체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하철의 특성상 출입 허가가 용이하고, 정보통신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속적으로 수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서울지하철공사)간 민간위탁 체결 현황〉

차수	계약기간	민간위탁 기관	비고
1	'03. 11. 18.~'05. 5. 30.	서울지하철공사	
2	'05. 5. 31.~'08.12. 31.	서울지하철공사	재계약 (수의계약)
3	'09. 1. 1.~'12. 3. 26.	서울지하철공사	재계약 (수의계약)
4	'12. 3. 27.~'15. 5. 31.	서울지하철공사	재계약 (수의계약)
5	'15. 6. 1.~'18. 5. 31.	서울교통공사	재계약 (수의계약)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다만, 수의계약방식은 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할 때 입찰절차를 거치지 않는 바, 발주기관으로서 계약 체결을 신속하게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장점 등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계약체결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제한적인 경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의계약을 행정편의적으로 폭넓게 운용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에서도 수의계약 사유에 대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석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해석을 통하여 명확한 적용 원칙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2018년 민간위탁 사업비용은 324백만원으로 최근 3년('15년 242백만원 ⇒ '16년 270백만원 ⇒ '17년 284백만원) 평균대비 5천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연간 투입인력은 오히려 감소('15년 3,532명, '16년 3,456명, '17년 3,354명)하고 있는바, 예산투입 대비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사업비용(최근3년)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사업비용 (단위:천원)	324,830	284,085	270,576	242,424

※ 최근 3년간 위탁실적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월간점검(회)	4,814	1,524	1,524	1,766	2인1조 야간 점검
분기점검(회)	357	153	204	-	"
년간 투입인력(명)	10,342	3,354	3,456	3,532	

- 따라서 공동구축의 사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여부와 예산절감에 효과적인지, 행정편의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민간위탁의 성과관리 이행점검 및 예산 의결 전 민간위탁 동의 필요

- 서울시(정보기획관)는 민간위탁조례(제4조3제3항)에 근거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지도·점검 시 성과점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의 운영성과 분야(성과점검)에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조례(제18조) 및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로 갈음 가능.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점검기간	'17.11.17 ~ 12.5	'16.10.27 ~ 11.10.	'15.12.24.
점검내용	통신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등		
지적사항	관리부서 연락처 변경 전 명찰 확인 후 교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연락처 수정후 명찰 교체	-	-

- 특히, 위탁실적에 대한 평가나 지도 점검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점검 항목의 조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해 세부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정보기획관은 민간위탁 동의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 등」)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18. 1.) 상 재위탁·재계약의 경우 예외 사항을 규정한 근거를 들어 2018년도 예산안을 미리 편성 제출하여 예산 의결을 받은 후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바, 향후 민간위탁 동의절차 추진에 있어 법령규정의 준수를 위한 정보기획관의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편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의회동의 → 예산안 의결 의무화
- 사전절차 대상 : 민간위탁조례(제4조의3 등)에 따른 시의회 동의 대상 사무

※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종합성과평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회 동의 과정에서의 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에 상정 가능

※ 다만, 위탁기간이 다음연도 중에 종료되어 재위탁·재계약 동의안을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 다음해에 상정하는 경우, 사전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49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9호에 의하여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위탁기간이 2018. 5. 31로 만료됨에 따라,
- 나. 지하철 구간에 설치·운영중인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에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중단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은 2001년 서울시(48%)와 서울교통공사(52%)가 공동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2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낭비

라. 위탁기간: 3년(2018. 6. 1.~2021. 5. 31.)

마. 수탁자: 서울교통공사

바. 선정방식: 수의계약

- 법적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파목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324,830천원('18년)

- 산출근거

- 직접 노무비 279,000천원, 산재 보험료 11,000천원,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5,300천원, 부가세 29,530천원

아.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18.2.12): 적격

자.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18.3.2): 적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통신인프라팀 서상영(☎2133-2870)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 민간위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15. 6. 1.~2018. 5. 31(3년)

○ 수탁기관: 서울교통공사

○ 사업내용

- 위탁물량: 광케이블 351km
- 위탁내용: 유지관리(월간 및 수시점검, 긴급 장애복구)
 - 광케이블 육안점검 및 외피 손상여부 점검, 광분배함 점검
 - 광접속 커넥터 및 여장관리 상태, 광케이블 고정 상태 등

○ 사업현황

- 민간위탁 협약 현황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03. 11. 18.~'05. 5. 30. (서울지하철공사)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05. 5. 31.~'08.12. 31. (서울지하철공사)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09. 1. 1.~'12. 3. 26. (서울지하철공사)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12. 3. 27.~'15. 5. 31. (서울지하철공사)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15. 6. 1.~'18. 5. 31. (서울교통공사)
- 민간위탁 사업비용(최근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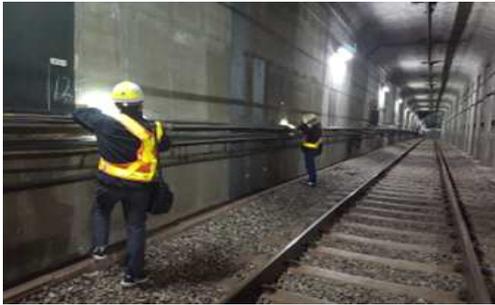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사업비용 (단위:천원)	284,085	270,576	242,424

□ 민간위탁 성과평가

○ 최근 3년간 위탁실적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월간점검(회)	4,814	1,524	1,524	1,766	2인1조 야간 점검
분기점검(회)	357	153	204	-	"
년간 투입인력(명)	10,342	3,354	3,456	3,532	

○ 점검사진

	
통신기계실 OFD 점검	터널내 광케이블 점검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현황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점검기간	'17.11.17 ~ 12.5	'16.10.27 ~ 11.10.	'15.12.24.
점검내용	통신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등		
지적사항	관리부서 연락처 변경 전 명찰 확인 후 교체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조치사항	연락처 수정후 명찰 교체	-	-

□ 민간위탁 향후계획

○ 사업평가

-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시설물은 2001년 서울시(48%)와 서울교통공사(52%)가 공동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1개 기관에서 통합관리는 예산낭비 방지
-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영관리를 위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서, 광통신 등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182명 중 자격증 96.7%) 보유 및 유지관리에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하고 2003년부터 서울시 초고속정보통신망 광통신 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음

○ 추진경과

- 2018. 1. 30: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2018. 2. 12: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개최결과 - 적격)
- 2018. 3. 2: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적격)

○ 향후계획

